

보도자료

2015. 6. 16.



대 법 원

Supreme Court of Korea

담당부서	사법지원실
담당자	사법지원심의관 이진웅(☎02-3480-1368)
공보관실 ☎ 3480-1451	

대법원 회생·파산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개최

- 대법원 회생·파산위원회(위원장 오수근)는 2015. 6. 16.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2015. 7. 1. 시행)에 따른 회생절차의 접근성·효율성 제고방안 건의
 - 회생·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‘회생·파산위원회’ (이하 위원회라고 함)가 2015. 6. 16. 11:00 ~ 12:00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
 - 위원회는 제4차 정기회의에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회생절차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
- 개정 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2015. 7. 1. 시행)” 의 주요 내용
 - [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신설]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액이 크지 않은 소액영업소득자(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채무액 30억 원 이하 영업소득자인 채무자 / 개인·법인 불문)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한 회생절차를 신설
 - [제1회 관계인집회 필수 개최 폐지]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필수적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임의적 개최 규정을 신설

건의문의 주요 내용

- 2015. 7. 1. 시행되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건의
 - 중소기업 등이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비용의 감소, 절차의 간이화 도모 필요
 - 법원사무관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하면서도 공정하고 충실한 조사를 위해 새로운 조사방식 개발 및 정착 필요
 - 개정법이 규율하는 소액영업소득자뿐 아니라 소액급여소득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절차 비용의 감소, 절차의 간이화 도모 필요
 -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회생절차 정보 전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

■ 법원 회생절차 실무의 변화

·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신설

- [개인채무자 소액영업소득자 사건]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채무액 30억 원 이하 개인 영업소득자 채무자의 회생 사건 : [종전]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 500만 원 내외 납부 ⇨ [2015. 7. 1.부터] 조사위원 보수 납부 필요 없음[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 업무 수행]
- [개인채무자 소액의 급여소득자 사건]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채무액 50억 원 이하 개인 급여소득자 채무자의 회생사건 : [2015. 7. 1.부터] 소액의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도 소액영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간이회생절차 신설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
- [법인채무자 소액영업소득자 사건]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채무액 30억 원 이하 법인 등(주식회사 등)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 : [종전]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 최고 1,500만 원 이상 납부 ⇨ [2015. 7. 1.부터] 약 300만 원의 간이조사위원 보수 납부(사건 난이도에 따라 증감 가능)

· 제1회 관계인집회 필수적 개최 폐지 및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임의적 개최

- [중전]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약 2-3월 후 제1회 관계인집회 필수 개최 → [2015. 7. 1.부터] 법원의 재량에 따라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, 개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への 서면통지, 회사 개최 관계인설명회 등 대체 조치를 취함

□ 회생·파산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개최

- 일시·장소 : 2015. 6. 16. 11:00 ~ 12: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
- 안건 : 법원 도산실무 변화(보고안건),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회생절차 접근성·효율성 제고방안(심의·의결안건)

□ 2015. 7. 1. 시행 예정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

○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신설

-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액이 크지 않은 소액영업소득자(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채무액 30억 원 이하)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한 회생절차를 신설. 간이회생절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☑ 소액영업소득자(개정법 제293조의2)

- “소액영업소득자”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함
- “영업소득자”란 부동산임대소득·사업소득·농업소득·임업소득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
-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‘30억 원’ 임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- **관리인 불선임 원칙** ➡ 기존 경영자가 그대로 사업 운영
- **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조사** ➡ 조사업무 간이화에 따른 절차비용의 감소
- **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** : (기존)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를 있는 경우 + (신설)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있는 경우

○ 제1회 관계인집회 필수적 개최 규정 삭제 및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임의적 개최 규정 신설

-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필수적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임의적 개최 규정을 신설
- 법원이 재량으로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, 법원이 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대체 조치를 취하도록 함 ➡ 절차의 간이화
- 대체조치의 예 : 서면 통지, 채무자 회사 개최 관계인설명회, 그 밖에 법원이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

□ **건의문 의결**

- **건의문 전문** : 별지 첨부
- **건의문 주요내용**

-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2015. 7. 1. 시행에 즈음하여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원의 회생절차 실무운영에서 유의할 사항을 건의

□ **법원 회생절차 실무의 변화**

○ **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신설 관련**

- [개인채무자 소액영업소득자 사건]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채무액 30억 원 이하 개인 영업소득자 채무자의 회생사건 : (중전)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 500만 원 내외 납부 ➡ (2015. 7. 1.부터) 간이조사위원 보수 납부 필요 없음(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 업무 수행)

☑ 법원사무관 간이조사위원

- 종전 법원 실무는 회계법인만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나, 2015. 7. 1.부터는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됨. 다만, 소액영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채권·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상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될 것임
- 개별 사건에서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특성을 살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함
-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
-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채무자가 간이조사위원 보수로 납부해야 할 절차비용이 없게 됨

· [개인채무자 소액의 급여소득자 사건]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채무액 50억 원 이하 개인 급여소득자 채무자의 회생사건 : [2015. 7. 1.부터] 소액의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도 소액영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간이회생절차 신설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

☑ 개업의 vs. 급여 의사

- 개정법의 간이회생절차는 소액 ‘영업소득자’ 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. 따라서, 예를 들어, 채무액이 20억 원으로 동일하더라도 ‘영업소득자’ 인 개업의는 간이회생절차 적용 대상이지만 ‘급여소득자’ 인 봉직의는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됨
- 봉직의 사건이 개업의 사건에 비해 더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법 시행 후 법원은 봉직의와 같은 소액의 개인 급여소득자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에서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

· [법인채무자 소액영업소득자 사건]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채무액 30억 원 이하 법인 등(주식회사 등)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 : [종전]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 최고 1,500만 원 이상 납부 ➡ [2015. 7. 1.부터]

약 300만 원의 간이조사위원 보수 납부(사건 난이도에 따라 증감 가능)

○ 제1회 관계인집회 폐지 관련

- [중전]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약 2-3월 후 제1회 관계인집회 필수 개최 ➡ [2015. 7. 1.부터] 법원의 재량에 따라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, 개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의 서면통지, 회사 개최 관계인설명회 등 대체조치를 취함

☑ 일본 회사갱생 절차의 경우

- 이미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재산상황보고집회를 신설한 일본의 회사갱생 절차에서는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법원이 재산상황보고집회를 개최
- 대신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상황보고집회를 개최하지 않고, 보고서 요지 서면의 송부 등의 방법과 관재인(우리나라 회생절차의 관리인)의 관계인설명회 개최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

○ 가상사례

☑ 가구제조업 자영업자 S씨 사례

[현재]

- ① 거래업체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은행 빚, 협력업체 대금 등 25억 원의 과다 부채로 가구제조업 사업이 부도가 난 자영업자 S씨
- ②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도 거절당하고 무담보 채무액이 5억 원을 넘어 개인회생절차도 이용할 수 없게 됨. 회생절차 이용을 알아보았으나 변호사 수임료 외에 회계법인 조사위원 선임에 드는 절차비용으로 1,000만 원 이상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에 회생절차 이용 포기
- ③ 부채해결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을 포기한 S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원자재 등 자산 가치 있는 재산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실상 폐업하여 채권자들이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S씨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짐



[변화할 실무]

- ① 법원사무관 간이조사위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에 대한 절차비용 납부의 부담 없이 손쉽게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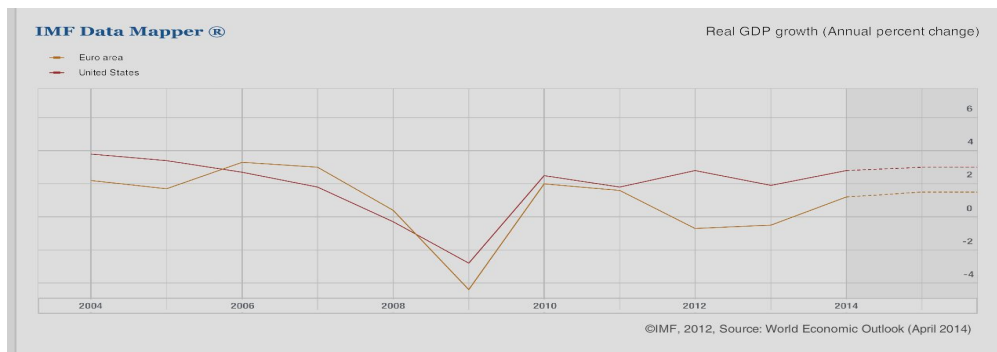
- ② 법원이 선임한 법원사무관 간이조사위원이 간이한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, 업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
- ③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, 업무, 회생절차 개시신청 경위 등을 적은 서면을 채권자들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개최를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절차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됨
- ④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이 완화되어 좀 더 쉽게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게 됨
- ⑤ S씨의 남아 있는 재산과 가구제조업을 계속하면서 생기는 소득으로 **채권자들이 일부나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고 S씨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짐**

□ 회생절차 접근성 · 효율성 제고의 사회적 효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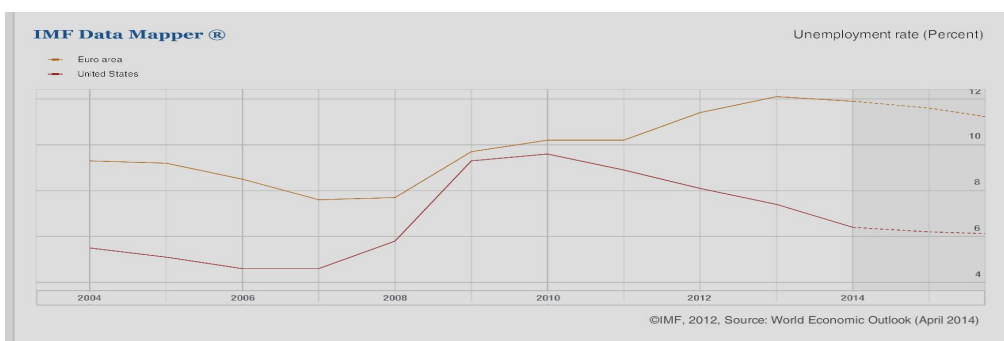
○ 효율적이고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통한 경제 회복 촉진

-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호황을 구가하는 반면 유로존은 일부 국가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등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
<미국과 유럽의 실질GDP성장률 비교>



<미국과 유럽의 실업률 비교>



- 유럽 정책연구소 소장 Daniel Gros

- 미국과 유럽이 금융위기 극복에 차이를 보인 가장 주요한 원인을 미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절차에서 찾고 있음(Daniel Gros, *The Transatlantic Growth Gap*, Project Syndicate(July 21, 2014), <http://www.project-syndicate.org/commentary/daniel-gros-attributes-america-s-edge-over-europe-to-its-faster-bankruptcy-procedures>)
- 이태리, 스페인, 그리스 등 유럽국가에서 소비자 도산절차는 5~7년이 소요되고,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해야만 면책이 가능함. 반면 미국에서는 1년 이내에 절차가 마쳐짐. 그는 미국 소비자는 과중한 부채로부터 신속히 해방됨으로써 새로이 시작할 수 있었고,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차이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면서, 유럽의 지도자들이 도산절차를 전문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는 데 관심을 두도록 촉구함

-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Stuart Gilson

- 미국 기업들은 잘 정비된 도산법제와 도산전문가들 덕분에 유럽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기를 벗어나 경쟁력을 회복하였음(Stuart Gilson, *Coming Through in a Crisis: How Chapter 11 and the Debt Restructuring Industry are Helping to Revive the US Economy*,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, A Morgan Stanley Publication(Fall 2012) 35쪽)

□ 참고 : 회생·파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경과

○ 개요

- 회생·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,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·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·파산위원회를 2013. 11. 28. 법원행정처에 설치

-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

○ 제1차 정기회의(2013. 11. 28.)

- 관리위원회 실질화 방안 건의

○ 제2차 정기회의(2014. 4. 22.)

-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

○ 제3차 정기회의(2014. 12. 17.)

-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건의

[별지]

- 2015. 7. 1. 시행되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
 - 중소기업 등 부채 규모가 작고 채권·채무관계가 단순한 소액영업소득자들이 회생절차에 쉽게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절차 비용의 감소, 절차의 간이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
 - 법원사무관 간이조사위원이 간이하면서도 공정하고 충실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의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을 개발하고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
 - 소액영업소득자뿐만 아니라 채무액이 크지 않은 소액급여소득자들에 대해서도 절차 비용의 감소, 절차의 간이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득 형태에 따른 절차 이용 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
 - 제1회 관계인집회의 필수적 개최 규정을 폐지하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임의적 개최 규정을 신설한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회생절차 정보 전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